

이사회 규정

주식회사 실리콘투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주식회사 실리콘투 이사회(이하 '이사회'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본 규정 제11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독립이사, 기타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로 한다.
- ② 의장이 결원 또는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(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,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)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의

제6조(종류)

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이사가 소집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제1항의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그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(의사의 진행)

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의사를 진행하고,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,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0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

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(부의사항)

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주주총회의 소집
- 영업보고서의 승인
- 재무제표의 승인
- 정관의 변경
- 자본의 감소
-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주식의 소각
-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
-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
-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주식배당 결정
- 중간배당의 결정
-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이사의 보수
- 상법에 의한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
-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
-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의 결정

- 기타 법령이나 정관상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사업계획의 승인 및 중대한 변경
- 중요한 신규사업 진출
- 기존사업 정리 및 양도
-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-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공동대표의 결정
-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중요한 사규, 사칙의 제정 및 개폐
- 지점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자회사의 편입(설립포함) 또는 제외
-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투자에 관한 사항
-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결손의 처분
-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신주의 발행
-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준비금의 자본전입
- 전환사채의 발행
-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-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
-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
- 자기주식의 소각

4. 이사 및 이사회,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

-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.

-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
-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·폐

- 이사회 내 위원회(감사위원회 제외)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- 이사회 내 위원회(감사위원회 제외)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
- 이사의 전문가 조력 여부에 대한 결정

- 이사의 경업승인 및 개입권의 행사

5. 기 타

- 중요한 소송의 제기, 화해, 취하 및 청구의 포기

-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
- 제7조 제3항에 따라 안전담당최고임원이 부의를 요청한 사항

-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
3.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4.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중요 사안

5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2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독립이사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, 그 중 1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한다.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가 독립이사가 되도록 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르고, 본 규정을 준용한다. 단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.

제13조(위임)

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4조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5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

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6조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총무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)

제4조, 제1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